

# Korean Tax Update

February 2020, Issue 68

## [조세뉴스]

---

### 기획재정부, 2019 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전문보기]

정부는 '19 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 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후속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 월 중순)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 2019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보기]

정부는 2.4(화) 개최된 제 5 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 건을 의결함. 금번 개정안은 '19 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 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임.

###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 명 세무조사 착수 [전문보기]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자산형성 초기인 30 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 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 명을 선정하였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 명, 고액전세입자 51 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 명을 선정하였음.

### 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 명 세무조사 실시 [전문보기]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이 주요 대상임.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 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전문보기]**

김현준 국세청장은 2월 20일(목)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음.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전문보기]**

국세청은 '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임.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함. 적용시기는 '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 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판례]**

**이 사건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 두 59188 판결

- 처분청은 당사자간 소송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제된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 2항의 입법 취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의 2 제 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법인세에서도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며(대법원 2012 두 10611 참조),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 두 32927 판결

-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례]**

**리스기간 만료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지 1889, 2020. 1. 22.

- 「지방세법」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제 1 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 4 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5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3 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제 3 항에서 “법 제 10 조 제 5 항 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 2 호에서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 4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오토리스 종결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매매금액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서 0895, 2020. 1. 23.

- 「지방세법」 제 106 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지방세법」 제 10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 조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대법원 2011 두 19963 참조),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나목 및 제 2 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자본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7 부 4113, 2020. 1. 30.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사실상 특정차입금이고 청구법인이 지급이자 자본화금액 계산 시 누락한 자본화대상 자산을 포함하고 과소적용한 자본화 이자율을 수정하여 지급이자 자본화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증가한 자본화 대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거래계좌에는 사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일반차입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금액 등이 혼재하여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발전소 건설자금의 원천이 매출대금인지 차입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면서도 자본화대상 지급이자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방식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점, 2010.12.30. 법률 제 10423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 28 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

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기각)

조심 2019 서 1930, 2020. 1. 31.

- 한미조세조약 제 14 조 제 4 항 제(a)호는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된다고 보아 일시불로 지급받는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는바(조심 2017 중 4588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 6 조 제 3 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할 것(조심 2019 중 3395, 2019.10.25.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는 해당 상표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와 쟁점상표권에 대한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

### 단말기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이 사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2018-심사-3, 2019-심사-420(병합), 2020. 2. 5.

-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어서, 당초의 단말기 할인 공급과 이 사건 위약금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이 없고 중도해지 시 당초에 가입자로부터 기대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보전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약금을 굳이 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가입자가 민법상 위약금 지급의 의사로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등에는 '위약금', '보조금 반환' 등으로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가입자의 지급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 주장처럼 가입자가 위약금 지급 의사를 가졌더라도 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과 같이 해당 금전과 재화의 공급과의 대가관계 여부는 대가의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 고객이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손상된 부분없이 단말기 등을 반납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반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단말기의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나,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한 채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위약금에는 당초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보전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중도해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약금이 당초의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음.

## [예규]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손익이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2392, 2019. 12. 1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 2 팀-303, 2008.02.19).

###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정책과-3390, 2019. 12. 23.

- 징수편의상 일부 납부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할 경우 일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5 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일부 납부한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납세자간 불형평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납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채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적용받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문용역비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2019. 12. 26.

-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 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특수목적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제 19 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지분 100%)한 날과 같은 날 해당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감소(100%→95%)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산정방식**

부동산세제과-152, 2020. 1. 20.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단순한 ‘일자’가 아닌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10 누 37874 판결, 2011.9.7. 선고 참조),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은 각각 다른 법률 행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시점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 지분율 변동(지분율 95%)에 앞서 甲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100% 취득)하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甲이 소유한 주식 최고비율은 100%로 보아야 함.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 2020. 1. 23.

-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 2.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99 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 18 조의 2 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 36 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법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서울세제-2127, 2020. 2. 10.

- 피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피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